Vol. 14 / June 2025

RICON FOCUS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건설업을 중심으로)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특징

제정 배경 및 경과

반복되는 후진국형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안전·보건조치를 확대한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여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21.1.26)

-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22.1.27),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2년간 유예기간 이후 시행('24.1.27)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비교 >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 사업주, 행위자, 법인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특수고용종사근로자 • 수급인의 근로자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단위)	• 全 사업장(상업장 단위)
중대재해 정의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처벌	• 경영책임자등(자연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 고의로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 사업주, 행위자 - 사망: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인(사망: 10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0.5억 원 이하 벌금)

* 건설공사는 탱크 청소작업에서 발생하는 산소결핍증, 고열, 폭염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 포함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사업·사업장의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

-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❶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❷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❸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이며, 이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9가지 의무, 관계 법령상 관리상 조치는 4가지 의무로 각각 세분화
- (적용 범위)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종사자 유해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총괄 결정 권한이 있는 사업·사업장에 발생하며,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장소의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지배력(작업지시권 등)이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는 사업·사업장에서도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

법 제4조제1항 제1호 관련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설치
3.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절차 마련
8.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9. 도급·위탁·용역 시 조치

법 제4조제1항 제4호 관련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점검
2.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
3.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에 대한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실시에 관한 조치

법 제5조

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시행
2.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법 제4조제1항 제2호: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이행
제 제4조제1항 제3호: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의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원 판례 동향 및 시사점

판결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37건의 법원 판결('25.3.17 기준) 중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 선고는 4건(10.8%)으로서 유죄 선고가 다수를 차지

- 유죄 선고된 33건의 경영책임자등 처벌수준은 ❶ 실형 5건(15.2%), ❷ 징역형의 집행유예 26건(78.8%), ❸ 벌금형 2건(6.1%)이며, 법인 처벌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벌금 500만 원~20억 원 수준
- 5건 실형 선고 이유는 ▲ 사고전력, ▲ 동종전과, ▲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며, 형량은 징역 1년~2년 수준
- 4건 무죄 선고 사유는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적용 미 대상(건설업 2건),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불이행과 사고 발생간 인과관계 부재(1건), ▲ 과실 정도 대비 사고 책임 과도(1건)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현황('25.3.17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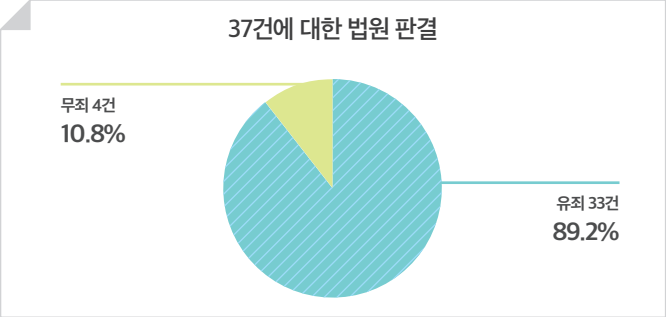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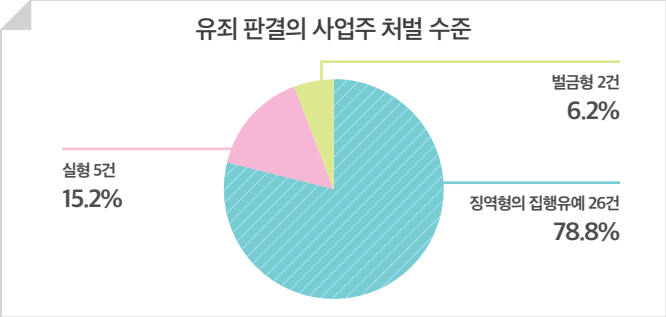

< 경영책임자등 실형 선고 사례(5건) >

업종	경영책임자등 형량	실형 선고 이유
제조업	징역 1년	과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유예기간에도 발생), 대표이사 동종전과 4개
제조업	징역 2년	사고 발생 10일 전 안전점검기관의 경고 무시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다른 설비도 방호장치 기능 상실
제조업	징역 2년	1년 전 2건의 사망사고 발생, 대표이사 동종전과 7개,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 없이 불량한 자세로 일관
건설업	징역 2년	대표이사 동종전과 3개, 사고 발생 4개월 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제조업	징역 1년 6개월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성형기의 사고 위험성을 반복적 지적(24회)받았으나, 안전조치 미이행

< 경영책임자등 무죄 선고 사례(4건) >

업종	법인 형량	무죄 선고 이유
건설업	벌금 1천만 원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적용 미 대상(50억 원 미만 현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에 사고 발생)
제조업	무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
건설업	벌금 3억 원	승강기 교체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적용 미 대상(유예기간에 사고 발생)
기타업	벌금 500만 원	경영책임자등의 불법(과실)의 정도에 비해 덤프트럭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책임은 과도

37건의 법원 판결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17건(46.0%),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의 순서로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판결이 다수를 차지

- 건설업 판결은 유죄 15건(88.2%), 무죄 2건[1](11.8%)이며,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수준은 ❶ 실형 1건(6.7%), ❷ 징역형의 집행유예 14건(93.3%)이고 법인 처벌은 벌금 1천만원~2억 원 수준

1) 1건은 사망사고 발생 작업인 조선소의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업종이 당초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분류된 것임. 당해 사고를 건설업 판결 사례에서 제외하면 건설업의 유죄 비율은 93.8%로서 전체 유죄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기업규모별 법원 판결은 중소기업 29건(78.4%), 중견기업 5건(13.5%), 대기업 3건(8.1%)의 순서로 도출

- 중소기업 판결은 유죄 28건(96.6%), 무죄 1건(3.4%)이며,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은 ❶ 실형 4건(14.3%), ❷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82.1%), ❸ 벌금형 2건(3.6%)으로 파악
- 28건의 중소기업 유죄 판결 중 건설업이 15건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건설사 유죄 선고 비율이 높은 편

< 기업규모·업종별 법원 판결 현황('25.3.17 기준) >

(단위: 건,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소계
		건설업	제조·기타업	건설업	제조·기타업	건설업	제조·기타업	
무죄		1(25.0)	0(0.0)	0(0.0)	1(25.0)	1(25.0)*	1(25.0)	4(100.0)
유죄	소계	15(45.5)	13(39.4)	0(0.0)	4(12.1)	0(0.0)	1(3.0)	33(100.0)
	실형	1(20.0)	3(60.0)	0(0.0)	1(20.0)	0(0.0)	0(0.0)	5(100.0)
	징역형의 집행유예	14(53.9)	9(34.6)	0(0.0)	2(7.7)	0(0.0)	1(3.8)	26(100.0)
	벌금형	0(0.0)	1(50.0)	0(0.0)	1(50.0)	0(0.0)	0(0.0)	2(100.0)
합계		16(43.3)	13(35.1)	0(0.0)	5(13.5)	1(2.7)	2(5.4)	37(100.0)

* 사망사고 발생 작업인 조선소의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기업을 건설업의 대기업으로 분류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항별로는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위험성 평가 및 조치, 26건, 27.1%),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등 평가기준 마련(안전책임자등 업무지원, 23건, 24.0%)이 큰 비중을 차지

-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힘들고 그 기준도 모호한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의 위반사항도 유죄판단의 근거로 많이 인용
- 건설업은 ▲ 도급 시 산재예방능력 평가기준 마련(도급 등 안전조치)도 주요 위반사항으로 인용
- 경영책임자등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가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

(단위: 건, (%))

구분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 총괄조직	③ 위험성평가/ 조치	④ 안전보건 예산편성	⑤ 안전책임자등 업무지원	⑥ 안전전문 인력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⑧ 비상상황 대응	⑨ 도급 등 안전조치	소계
건설업	7(13.2)	2(3.8)	12(22.6)	3(5.7)	11(20.8)	1(1.9)	6(11.3)	5(9.4)	6(11.3)	53(100.0)
제조업	1(10.0)	0(0.0)	4(40.0)	0(0.0)	2(20.0)	0(0.0)	3(30.0)	0(0.0)	0(0.0)	10(100.0)
기타업	1(3.0)	2(6.1)	10(30.3)	3(9.1)	10(30.3)	1(3.0)	1(3.0)	2(6.1)	3(9.1)	33(100.0)
합계	9(9.4)	4(4.2)	26(27.1)	6(6.3)	23(24.0)	2(2.1)	10(10.4)	7(7.3)	9(9.4)	96(100.0)

주: 유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위반이 주로 인용되나, '25년 1월 판결에서 최초로 재발방지대책 미이행/반기 이행점검 미이행도 지적

시사점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등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유형보다 높은 상황이며, 이는 ❶ 인력과 예산의 부족과 함께 ❷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에 기인

- 건설사는 다수 현장에서 입·출입이 빈번한 일용근로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급구조로 인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이 힘들기 때문
- 건설투자 저조, 주택경기 침체, PF發 유동성 위기 등과 맞물린 중소 건설사의 사법리스크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초래할 가능성 농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모호성으로 인해 판결 시 법 적용·해석에 논란이 여전히 많이 존재

- 범죄 성립요건인 ❶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 ❷ 의무 위반과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 ❸ 의무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나, 검찰 공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

건설업에 미친 영향과 재해예방효과

건설업에 미친 영향

강한 처벌로 인한 안전인식 개선효과는 있으나, 형식적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자 부족 등 부정적 결과도 초래

- 업무 시스템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보다 책임회피를 위한 서류작성 등 '보여주기식' 안전관리가 증가
- 특히, 중소 건설사의 안전관리자는 업무 증가로 인해 대형 건설사 이직 또는 타 업종 전환이 많은 상태

<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친 영향 >

설문조사 : 건설현장 원·하수급자 현장소장, 감리, 안전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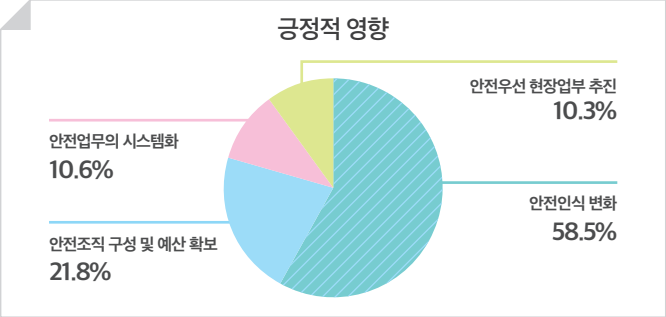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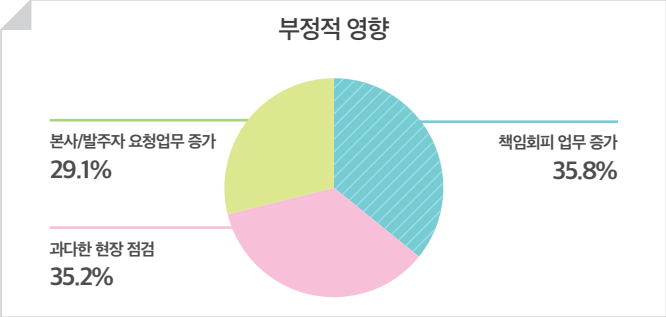

자료: 김진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공 건설현장 고나리책임자의 인식 및 중대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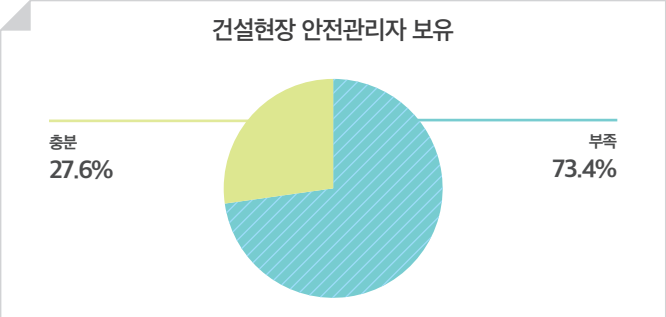

자료: 김진규, 전게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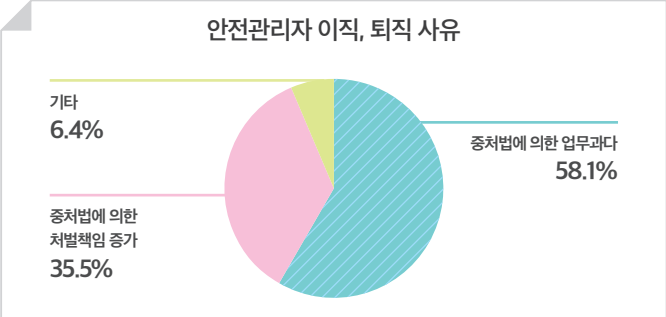

자료: 조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논문, 2023

재해예방효과

최근 사망사고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상태

- 전반적으로 약한 감소추세이나, 24년 1월부터 적용된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전년과 동일함.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일부 감소한 것도 건설경기 침체 탓이라는 시각이 우세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22~'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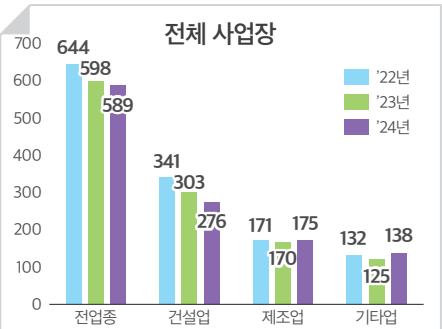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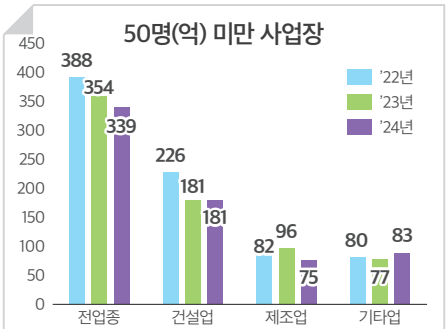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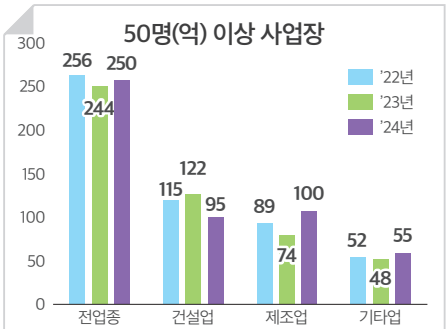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제점과 원인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위주 규제는 안전인식 개선에는 일부 효과가 있지만,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불명확성·비현실성으로 인해 '보여주기식' 안전관리가 중시되어 실질적인 재해예방효과는 미흡한 편**
  -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불명확성·비현실성은 ❶ 기업 규모 및 업종 특성 미고려, ❷ 안전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부족 및 강한 중복성, ❸ 처벌 위주의 규제 방식에 기인
- **(기업규모·업종특성 미반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은 사업·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의무를 규정**
  - 기업규모와 업종특성에 따라 구축·이행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과 그 수준은 상이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영 위축과 과잉 처벌 논란을 초래
  - 특히, 중소 건설사의 경우 다수 현장에서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도급구조도 복잡하여 9가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를 모두 준수하기 힘든 상태
  -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일용근로자 입·출입이 매우 빈번하여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투입 시 발생하는 의무인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부족 및 중복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과 상충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8가지로 한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실질적으로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인에게 경영책임자등의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
  -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보존'과 중복되며, 이밖에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도 관련 법령의 내용과 중복
- **(처벌 위주의 규제 방식) 「중대재해처벌법」은 타 법령보다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법 준수 노력보다는 책임회피를 위한 서류작성 등 '보여주기식' 안전관리업무를 유발하여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을 저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해석에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강한 처벌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 농후
  - 처벌을 두려워하여 수행되는 안전관리활동은 지속성이 낮아 재해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하며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개선방향

-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착을 위해 경영책임자등의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
  - ❶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부족 및 중복성 → 불필요한 의무 삭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무는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 재해예방활동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 ❷ 기업규모·업종특성 미반영 → 기업규모·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9가지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의 내용과 적용 수준을 산업·규모별로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
  - ❸ 처벌 위주 규제 방식 → 인센티브 기반 자율적 안전관리: 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상으로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감경 사유로 활용하여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모색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내용

법률 개정 및 기타

경영책임자등의 불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삭제, 기업규모·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인센티브 기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필요

- (법 제4조제1항 2~4호 삭제) 경영책임자등의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무를 제외
- (시행령 제4조 상단 수정) 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용과 적용 수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
- (법원 양형기준 개선) 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상으로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감경 사유로 활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 개선이 요구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내용 >

중대재해처벌법(현행)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호 생략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정안)**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소 건설사의 경우 영세한 기업 규모 특성과 다수 현장에서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도급구조도 복잡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여 5가지 의무만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중소건설사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예시) >

의무	검토내용	적용여부
제1호: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안전에 대한 중소건설사 경영자의 의지표명과 방향 설정이 중요	적용
제2호: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영세한 중소건설사 입장에서 조직구성·운영이 어려운 상태	적용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삭제)
제3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중소 건설사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서 가장 중요	적용
제4호: 안전보건 예산평성	영세한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 예산 편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	미적용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소수의 인력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 건설사 여건 하에서 이행 가능성 낮음	미적용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불필요	미적용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공사 특성상 모든 종사자의 의견 청취는 사실사 불가능, 다만 위험성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이행	적용 (위험성 평가결과 공유만 한정)
제8호: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사실상 서류업무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행 가능성 낮음	미적용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도급 위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특성상 유지할 필요	적용

www.ricon.re.kr

RICON FOCUS
Vol. 14 / June 2025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 행 일 2025. 6.
발 행 인 김희수
발행위원 홍성호, 조재용
발 행 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0707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등 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